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4월 13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13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4. 12.(월)	담당부서	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제정TF
담당과장	강규형 팀장(044-203-5895)	담 당 자	조동후 사무관(044-203-5894)

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4.16일부터 시행

- 재산 피해금액의 100%를 지원하고, 재심의 신청이 가능 -

□ 「**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**」 **일부개정령안**이 4월 13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, **4월 16일**(금)부터 **시행**될 예정입니다.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 **피해자**에 대한 **지원**을 **확대**하기 위해 **재산피해 지원금**을 **상향 조정**하고,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**재심의 세부절차**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첫째, **재산피해**에 대한 **피해구제 지원금**을 재산유형별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, **'피해금액의 80%'**에서 **'피해금액 전부'**로 **상향 조정**하였습니다.

○ 둘째, **피해구제 지원금**의 **재원 조달**을 위해 **국가**가 **80%**, 경상북도, 포항시 등 **관계 지방자치단체**가 **20%**를 각각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셋째, 피해구제 신청인의 **이의제기 권리**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**재심의 세부절차**를 마련하였습니다.

□ 추후, 정부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**피해구제 지원금**을 조속히 **지급**하고, **포항시 경제활성화 지원사업** 등도 **차질없이 추진**할 계획입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제정TF 조동후 사무관(☎ 044-203-58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